

# 서울특별시 지역상생교류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3335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년 10월 18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가. ‘지역상생교류사업’은 서울시민에게는 지역의 우수한 농·수·특산물 구매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중소 농·수·특산물 생산자에게는 판로를 지원하여 서울과 지역, 도시와 농어촌 간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.
- 나. 서울의 수요와 지역자원을 상호 활용할 수 있는 협력관계 구축, 서울시민과 농어촌 등 지역주민 간의 상호 교류 촉진 등 지역 간 상생 교류 활성화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함.
- 다. 기존 수탁기관의 위탁 기간이 2026년 3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역량 있는 민간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지원하고자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사무명 :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 운영
- 나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
- 민간위탁 추진 근거
    - 「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7조

○ 민간위탁 필요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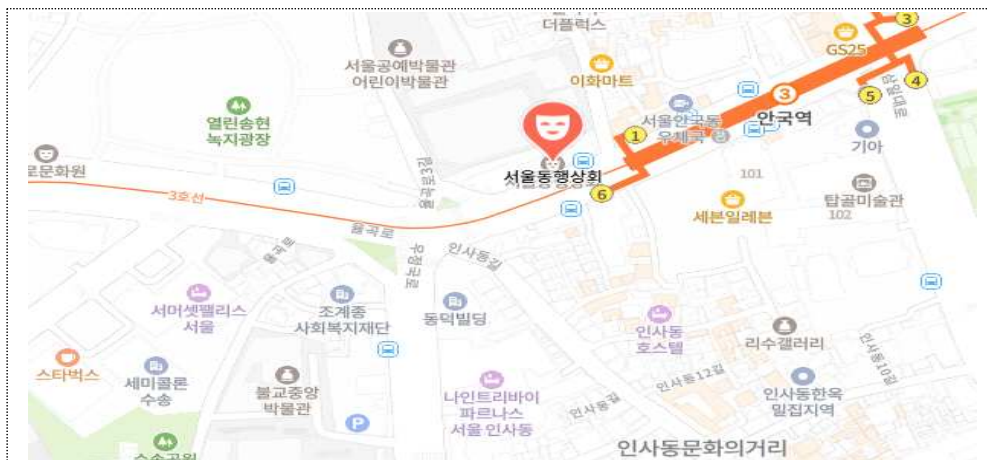
-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나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는 민간위탁이 가능하고, ※ 「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
- 지역 간 상생교류의 촉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상생교류 협력 사업을 관련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, ※ 「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7조
- 지역상생 교류사업은 도농간 교류, 지역상생, 유통 및 지역 경제 등 민간분야의 전문성과 경력이 필요한 바, 민간의 축적된 경험과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자 함

다. 주요 위탁사무

- 지역특산물 상설판매장 입점 업체 선정·관리 및 운영, 정기 기획전 기획·운영 등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및 유통망 확대
- 지역 상생 신규사업 발굴 및 정책 개발 지원
- 지역 상생 교류사업 홍보 및 홈페이지 운영
- 그 밖에 지역 상생 교류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

라. 위탁시설 개요

- 시 설 명 : 서울동행상회(종로구 율곡로 39, 안국빌딩 신관 1층)
- 위 치 도



○ 개관일자 : '18.11.3.

○ 규 모 : 413m<sup>2</sup>

마. 민간위탁기간 : 3년('26.4.1.~'29.3.31.)

바. 수탁자 선정방법 : 공개모집(재위탁)

사. 소요예산 : 1,355백만원('25년 예산)

아. 심의결과 : 적정('25년 7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)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○ 「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」

제4조(시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서울시민과 농어촌 등 지역주민 간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여 시민의 수요를 충족하고 지역 상호 간 부존자원을 유지·발전시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지역 간 상생교류 활성화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
제6조(상생교류 협력사업) ① 시장은 지역 간 상생교류의 촉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지역 간 상생협력 분야의 발굴 및 모니터링
2. 지역 간 상생협력 관련 연구·조사 및 정보의 집적·제공
3.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기반 조성
4. 농수산물 유통, 귀농귀촌 등 지역 간 상생협력 지원
5. 지역 간 상생협력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상담
6. 지역의 관광, 특산물, 문화 등 종합적 정보제공 및 전시·홍보 등을 위한 시설의 설치·운영
7. 그 밖에 지역 간 상생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7조(사무의 위탁) ① 시장은 상생교류 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제6조 제1항 각호의 사업 중 일부를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관련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상생교류 협력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

○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나. 예산조치 : '26년도 민간위탁금 예산편성 필요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행정국 대외협력과 홍은지 (☎ 2133-2776 )